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併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불”을 “출납”으로 하고, 같은 서식 부표3 중 “제품수불”을 “제품출납”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지불한”을 “지급한”으로 한다.

제2조(「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정부지불보증법인”을 “정부지급보증법인”으로 한다.

제3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 본문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별표 2 제2호 2.C.1의 대상 용역란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4조(「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6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사양확인용”을 “규격확인용”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36의 규격란 제2호 중 “정격”을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으로 하고, 같은 표 41의 규격란 제2호 중 “사양”을 “규격”으로 한다.

제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한”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으로,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라 발행한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라 발행하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7조제1항

에 따라”로, “납입필통지서”를 “납입확인통지서”로 한다.

제6조(「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불기일”을 “지급기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작성 시 주의사항란 제2호 중 ““지불기일””을 각각 ““지급기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중 “이자 지불기일”을 “이자 지급기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승인조건란 제4호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지불한다”를 각각 “지급한다”로, “지불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7조(「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1년 이상”을 “1년을 초과하여”로 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중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연부연납(세금 신고기한 경과 후 장기간 분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안분배정할”을 “배정할”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안분배정한다”를 “배정한다”로 한다.

제109조제1항 중 “국고금대차대조표”를 “국고금재무상태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고금대차대조표”를 “국고금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10조제1항 중 “국고금대차대조표”를 “국고금재무상태표”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절취선”을 “자르는 선”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절취선”을 “자르는 선”으로 한다.

제9조(「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병기(併記)하고”를 “함께 적고”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공란”을 각각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절취하여”를 “잘라서”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제10조(「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호 중 “계류 중”을 “계속 중”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1호 중 “폐도”를 “폐쇄도로”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④ 현황지목란 중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4. 독

25. 구거(溝渠: 도랑)

별지 제4호서식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제11조(「국채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국채의 권종·규격등)”을“(국채의 종류·규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권종·규격·모양·기호등”을 “종류·규격·모양·기호등”으로, “권종은 종류별로”를 “국채의 종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고금대차대조표에 편입하여야”를 “국고금재무상태표에 편입해야”로 한다.

제12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2)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가목2)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3조(「물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물품수급관리계획의 시달 등)”을“(물품수급관리계획

의 통지 등)”으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관능검사[관능검사: 사람의 오감(五感)을 통한 물품 검사]”를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4조(「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2조제1항제3호의2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1)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서식 (2)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하며, 같은 서식 (3)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서식 (4)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1)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서식 (2)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1) 중 “공란”을 각각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앞쪽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2호 중 “대차대조표상”을 “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제5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대차대조표상”을 “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갑)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라목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붙임 서류란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63호의7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의16서식(2) 6쪽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71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별지 제76호의14서식(을) 앞쪽 중 “대차대조표상”을 “재무상태표상”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대차대조표상”을 각각 “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의25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의26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4호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77호서식 앞쪽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5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적색) 및 (청색)의 공급가액란 중 “공란수”를 각각 “빈칸수”로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 (적색) 및 (청색)의 공급가액란 중 “공란수”를 각각 “빈칸수”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지불한”을 “지급한”으로 한다.

제16조(「세무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지불방법”을 “지급방법”으로, “것중”을 “것 중”으로 한다.

제8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목의 규정을”을 “가목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나목에 따른”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99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1) 4쪽 중 제2쪽 작성방법란 제11호 중 “공란”을 각각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1) 및 (2) 공급가액란 중 “공란수”를 각각 “빈칸수”로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1) 뒤쪽 작성방법란 제10호 중 “병기하며”를 “함께 적으며”로 하고, 같은 서식 (2) 뒤쪽 작성방법란 제10호 중 “병기하며”를 “함께 적으며”로 하며, 같은 서식 (3) 뒤쪽 작성방법란 제9호 중 “병기하며”를 “함께 적으며”로 하고, 같은 서식 (4) 뒤쪽 작성방법란 제10호 중 “병기하며”를 “함께 적으며”로 하며, 같은 서식 (5) 뒤쪽 작성방법란 제9호 중 “병기하며”를 “함께 적으며”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1) 작성방법란 제3호 및 제13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하고, 같은 서식 (2) 뒤쪽 작성방법란 중 “공란”을 각각 “빈칸”으로, “수개”를 “여러 개”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1) 8쪽 중 제4쪽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란 중 “지불수단별”을 “지급수단별”로 하고, 같은 서식 (2) 5쪽 중 제2쪽 유의사항란 제2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대차대조표상”을 “재무상태표상”으로 한다.

별지 제98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98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8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9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99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0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제18조(「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판매장란 중 “쇼핑센터”를 “쇼핑센터”로 한다.

제19조(「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의 개정)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되어 비전대차관자금을 국고에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금액에 대하여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제35조제2항 중 “당해 환급액을 여입하게 하여야”를 “해당 환급액을 국고로 편입하게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고로 편입시의 적용환율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20조(「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의 개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속이표”를 “부속 이표(이자 증표)”로,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정부보관유가증권수입필보고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수입확인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

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4조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납입필통지서”를 “납입확인통지서”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납입필통지서”를 “납입확인통지서”로, “인계하여야”를 “인계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납입필통지서”를 “납입확인통지서”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증빙서 기타 서류의 목록 각3통”을 “증빙서 및 그 밖의 서류의 목록 각 3통”으로, “입회하에”를 “참관 하에”로, “의한”을 “따른”으로, “필한”을 “확인한”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

입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청구이표의지불기”를 “청구이표의지급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납입필통지서”를 “납입확인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납입필통지서”를 “납입확인통지서”로 한다.

제21조(「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의 개정)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불보관”을 “출납보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수불 보관하여야”를 “출납 보관해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유가증권수불사무의 통할)”을 “(유가증권출납사무의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불사무를 통할하게”를 “출납사무를 총괄하게”로, “통할점”을 “총괄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유가증권의 수불보관)”을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불 보관하여야”를 “출납 보관해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수불하여야”를 “출납해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8조 중 “유가증권이표청구서”를 “유가증권이표(이자 증표)청구서”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

권납입확인통지서”로, “수입하여야”를 “수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교부하여야”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12조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환부하여야”를 “환부해야”로 한다.

제13조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환송하여야”를 “환송해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환부하여야”를 “환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납입필통지서”를 “납입확인통지서”로, “반송하여야”를 “반송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할점”을 “총괄점”으로,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수불사항”을 “유가증권출납사항”으로 한다.

2. 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

3. 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제21조 중 “통할점”을 “총괄점”으로, “수불보고”를 “출납보고”로, “수

불상황을 기록하여야”를 “출납상황을 기록해야”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 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에는 정부유가증권총괄장의 계산과목마다 각 총괄점별로 계좌를 설치하고 각 총괄점으로부터의 매월의 출납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면액의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23조(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에는 정부유가증권총괄장의 계산과목마다 해당 총괄점과 그 소속취급점별로 계좌를 설치하고 해당 총괄점의 출납액과 그 소속취급점으로 부터의 매월의 출납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면액의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24조 중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를 “출납상황을 기록해야”로 한다.

제25조 중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를 “출납상황을 기록해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수불액”을 “출납액”으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수불액”을 “출납액”으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정부유가증권수불계산서)”를 “(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불상황”을 “출납상황”으로, “수불계산서”를 “출납계산서”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불계산서”를 “출납계산서”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

야”로 한다.

제34조 중 “수불별”을 “출납별”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정부유가증권수불계산서”를 “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로 하고, 같은 서식 부표 중 “수불”을 각각 “출납”으로 한다.

제22조(「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차량운반구”를 “차량운반기구”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차량운반구”를 “차량운반기구”로 한다.

제23조(「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의 개정)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수개”를 “여러 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영”을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등록하여야”를 “등록해야”로 한다.

제9조 중 “마멸”을 “닿아 없어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4(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을 일반경쟁,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예정가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등 기관장이 해당 계약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4(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 ----- ----- ----- ----- ----- ----- ----- 공개해야 ----- ----. ----- ----- 고려하여 ----- ----- 않아야 ----- ----- 그렇 지 않다.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u>당해</u>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u>감안하여</u>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6. ----- ----- ----- ----- <u>해당</u> ----- <u>고려하여</u> ----- -----
7. ~ 19. (생략)	7. ~ 19. (현행과 같음)
20. 수출물품 <u>사양확인용</u> 물품	20. ----- <u>규격확인용</u> ----
21. ~ 23. (생략)	21. ~ 2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7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제4항에 따른 예탁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예탁증명서를 말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점(이하 “유가증권취급점”이라 한다)에 납입하게 하여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와 함께 해당주식에 대한 양도증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각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7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 ----- ----- ----- ----- ----- -----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 -----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라 발행한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 ----- ----- 해야 -----.
②유가증권취급점은 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와 주식을 제출받은 때에는 주	②----- ----- -----

식의 종류·권면액·기호·번호·장수등과 상장증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정부보관유가증권 납입필통지서의 비고란에 해당 주식의 소유자(기명식 주식의 경우에는 최후의 양수인)의 성명을 주식별로 기재하고 해당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u>교부하여야</u> 한다.	----- ----- -----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라 발행하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 ----- ----- ----- ----- <u>교부해야</u> ----- -----.
---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일반유형자산) ① 일반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제1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비품, 기타 일반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제13조(일반유형자산) ① ----- 1년을 초과하여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① (생략)	제29조(수익의 인식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연부연납(年賦延納)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 징수할 세액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	4. 연부연납(세금 신고기한 경과 후 장기간 분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정보통신매체 등의 장애시 지출절차) ① (생략)	제46조(정보통신매체 등의 장애시 지출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관을 대신하여 한국은행등에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국고금입금요구서등에 한국은행등에 등록한 중앙관서의 장의 인감을 날인하여 인편·우편 또는 <u>모사전송</u> 의 방법으로 이를 <u>송부</u> 하여야 한다.	②----- ----- ----- ----- ----- ----- ----- <u>팩스</u> ----- <u>송부</u> <u>해야</u>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1조(모집발행) ① (생략)	제81조(모집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경우에 응모총액이 발행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응모액에 비례하여 <u>안분배정</u> 할 수 있다.	②----- ----- ----- <u>배정</u> 할 ----- -----.
제83조(입찰발행) ① (생략)	제83조(입찰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경우에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응모액에 비례하여 <u>안분배정</u> 한	②----- ----- ----- <u>배정</u> 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1조(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영 제7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재산을 말한다. 1. (생략) 2. 국가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u>계류</u> 중이거나 그 밖의 분쟁이 있는 재산 3. 4. (생략)	제51조(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 ----- ----- -----. 1. (현행과 같음) 2. ----- --- <u>계속</u> 중----- ----- 3. 4. (현행과 같음)
제56조(은닉재산등의 보상률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1. 공공용재산(<u>폐도</u> 와 폐하천을 포함한다) 외에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제56조(은닉재산등의 보상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u>폐쇄도로</u> ----- ----- ----- -----

2. ~ 4. (생략) ③·④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국채의 권종·규격등) ①국채의 <u>권종·규격·모양·기호</u>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u>권종은 종류별로</u> 국채를 발행하는 때에 정한다. ② (생략)	제4조(국채의 종류·규격등) ①-- ---- <u>종류·규격·모양·기호</u> 등----- <u>국채의 종류는</u>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국채자금의 회계처리) ①한국은행은 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원리금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수지를 국고금총괄장에 기입하고, <u>국고금대차대조표에 편입하여야</u> 한다. ② ~ ④ (생략)	제9조(국채자금의 회계처리) ①-- ----- ----- ----- ----- <u>국고금재무</u> <u>상태표에 편입해야</u> -----. ② ~ ④ (현행과 같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1. (생략) 2. 자본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가. 법인의 경우 1) (생략) 2) 직전 사업연도의 <u>대차대조표</u> 및 손익계산서(신설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생략) 3. ~ 6. (생략) ② ~ ⑤ (생략)	제2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 ----- ----- ----- ----- ----- ----- <u>제출해야</u>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1) (현행과 같음) 2) ----- <u>재무상</u> <u>태표</u> ----- ----- 나.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물품수급관리계획의 시달 등) ① ~ ③ (생략)	제23조(물품수급관리계획의 통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재물조사) ① ~ ④ (생략)	제27조(재물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물품의 상태를 분류하는 경우에는 <u>관능검사[관능검사: 사람의 오감(五感)을 통한 물품검사]</u> 의 방법으로 하되, 관능검사로 물품의 상태를 분류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화학시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 ----- <u>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u>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 ----- -----.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u>감안하여</u>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 ----- ----- ----- ----- ----- ----- <u>고려하여</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 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82조(서식) ①----- ----- ----- -----. ----- ----- ----- -----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영 제48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 라 함은 상품등의 판매 또는 양 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 타의 <u>지불방법</u> 에 따라 2회 이상 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u>것</u> 중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 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 ----- ----- ----- ----- ----- ----- <u>지급방법</u> ----- ----- <u>것</u> 중 ----- ----- ----- ----- -----.
제80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 정) ①·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u>가목의 규정을</u> 적 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 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1. (생략) 2. 법 제99조제1항제1호 <u>나목의</u>	제80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 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가목</u>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나목</u> 에

<u>규정에 의한</u> 건물 전기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 · 신축연도 · 구조 · 내용연수 등을 <u>감안하여</u>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을 3. (생략) ④ ~ ⑧ (생략)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 · 관리 및 입력 · 출력 상태등을 <u>감안하여</u>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u>따른</u> ----- ----- -- <u>해당</u> ----- ----- <u>해당</u> ----- ----- ----- <u>고려하여</u> ----- <u>여</u> ----- 3.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 ----- ----- ----- ----- <u>고려하여</u> ----- -----.
---	---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기한후 납입)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대차주가 전대원리금 등을 기한내에 납입하지 <u>아니한</u> 때에는 납입을 요하는 전대원리금등에 대하여 <u>당해</u> 납입기일로부터 그 실제납입일 전일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연체금리를 <u>감안하여</u>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11조(기한후 납입) ----- ----- ----- <u>않은</u> ----- ----- <u>해당</u> ----- ----- ----- <u>고려하여</u> ----- -----.
제19조(비전대차관자금의 국고이체)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장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되어 비전대차관자금을 국고에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금액에 대하여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비전대차관자금의 국고이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되어 비전대차관자금을 국고에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금액에 대하여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제35조(환급액의 납입) ① (생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35조(환급액의 납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당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환급액을 여입하게 하여야 한다.	----- <u>해당 환급액을 국고로 편입하게 해야</u>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여입시의 적용환율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고로 편입시의 적용환율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로 한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장부의 비치)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출 납부와 정부보관유가증권출납 부를 각각 비치하고 유가증권의 명칭·기호·번호·장수·권면 액·권면액별·총금액별과 부 속이표의 유무 및 다음의 사항 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의 비치) ----- ----- ----- ----- ----- 부 속 이표(이자 증표)----- -- 기록해야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제1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납입 절차) ①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 자가 제11조에 따라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 납입서와 인감을 첨부하여 취급 점에 제출하고 정부보관유가증 권납입필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납입 절차) ①----- ----- ----- ----- 정부보관유가증 권납입확인통지서-----.
②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입하고 자 할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정 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 정부보 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와 인감을 첨부하여 임시취급점에	②----- ----- ----- ----- -----

제출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납 입필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임 시취급점으로부터 정부보관유 가증권수입필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 정부보관유가증권납 입확인통지서-----. ----- ----- 정부보관유 가증권수입확인보고서----- -----.
③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였 을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 입필통지서와 인감을 해당 유가 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 ----- ----- 정부보관유가증권납 입확인통지서----- ----- 제출해야 -----.
제14조(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 서의 교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은 제10조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가증권이나 정부보관유 가증권납입필통지서가 제출되 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를 그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제14조(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 서의 교부) ----- ----- ----- 정부보관유 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 ----- ----- 교부해야 ----- --.
제18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절차)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 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 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	제18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절차) ①----- ----- -----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

필통지서에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 하여금 환부하도록 하는 뜻을 적어 이를 청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청구가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환부를 청구하는 것일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에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 하여금 일부환부를 하도록 하는 뜻을 적어 이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하고 청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일부환부청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 전단에 따라 수탁증서, 납입필통지서 또는 일부환부청구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제출하여 유가증권을 환부

확인통지서-----

교부해야 ----.

②-----

-----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

----- 교부해야 -----.

---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

③-----
----- 납입확인통지서 -----

받아야 한다.

제24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체절차)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3조에 따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 납입필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 이에 제23조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한 후 그 유가증권에 대한 상환금 또는 지급금수령의 절차를 거쳐 이를 정부보관금을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를 정부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는 경우에는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수탁증서 또는 납입필통지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27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절차)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6조에 따라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을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를 기획재정부

-----.

제24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체절차) -----

----- 납입확인통지서-----

----- 인계해야 -----.

----- 납입확인통지서-----.

제27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절차) ①---

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u>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u> 에 이관의 사유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소속관서명 및 그 성명을 적어 이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u>송부하여야</u> 한다.	----- ----- ----- ----- <u>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u> ----- ----- ----- ----- ----- <u>송부해야</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인계절차) ①전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현재액조사서와 인계할 장부· <u>증빙서</u> 기타 서류의 목록 각3통을 작성하고 이를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u>입회하에</u> 현물과 전조의 규정에 <u>의한</u> 정부유가증권 현재액 증명서와 대조하여 수수한 후 유가증권현재액조서와 목록에 연월일과 수수를 <u>필한</u> 뜻을 기재하여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같이 기명날인 <u>하여야</u> 한다.	제30조(인계절차) ①----- ----- ----- ----- <u>증빙서 및 그 밖의 서류의 목록 각 3통을</u> ----- ----- -- <u>참관 하에</u> ----- ---- <u>따른</u> ----- ----- ----- <u>확인한</u> ----- ----- ----- <u>해야</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수탁증서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u>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u> 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 또는 납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청구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납입자가 <u>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통지서</u> 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수탁증서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① ----- ----- ----- <u>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u> ----- ----- ----- ----- ----- <u>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u> ----- -----.
②정부보관유가증권을 환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u>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u>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 일부환부청구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 또는 납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청구를 <u>당해</u>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할 수 있다.	②----- ----- ----- <u>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u> ----- ----- ----- ----- ----- <u>해당</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은행(본점·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의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 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u>수불보관</u> 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u>출납보관</u> ----- -----.
제2조(적용범위) 한국은행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을 <u>수불 보관하여야</u> 한다.	제2조(적용범위) ----- ----- ----- ----- ----- ----- <u>출납 보관해야</u> ----- --.
제3조(<u>유가증권수불사무의</u> <u>통할</u>) 한국은행은 그 소속점에서 취급하는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의 <u>수불사무를 통할하게</u> 하기 위하여 지방에 <u>통할점</u> 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u>유가증권출납사무의</u> <u>총괄</u>) ----- ----- ----- ----- <u>출납사무를 총괄하게</u> ----- <u>총괄점</u> -----.
제4조(<u>유가증권의 수불보관</u>) 한국은행은 정부소유유가증권 정부	제4조(<u>유가증권의 출납보관</u>) --- -----

보관유가증권과 타유가증권을 각각 구분하여 <u>수불 보관하여야</u> 한다.	----- ----- <u>출납 보관해야</u> --- ---
제5조(유가증권의 보관장소) 정부 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은 그 증권을 <u>수불하여야</u> 할 한국은행이 이를 <u>보관하여야</u> 한다. 다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2조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유가증권의 보관장소) --- ----- ----- <u>출납해야</u> --- ----- <u>보관해야</u> --- ---. ----- ----- -----.
제8조(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한국은행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8조에 따라 정부소유 <u>유가증권이표청구서</u> 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u>교부하여야</u> 한다.	제8조(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 ----- ----- ----- <u>유가증권이표(이자 증표)청구서</u> ----- ----- <u>교부</u> <u>해야</u> ----.
제10조(정부보관유가증권 제출자로부터의 수탁) ①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 유가증권납입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영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u>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u> 를	제10조(정부보관유가증권 제출자로부터의 수탁) ①----- ----- ----- ----- ----- <u>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u> ---

권) ①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받은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이관하여 수입한 후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하며 그 취급점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해당 유가증권을 송부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0조(장부) ① 한국은행은 「국가재정법」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장부 중 그 본점에 있어서는 제1호와 제2호의 장부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제4호와 제5호의 장부를, 통할점에 있어서는 제3호부터 제5호

[illegible]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장부) ①-----

총괄

점-----

까지의 장부를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정부유가증권수불명세장

3. 정부유가증권수불총괄장

4. 5. (생략)

②한국은행은 정부의 소유 또는 보관에 관한 유가증권수불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장부외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21조(정부유가증권총괄장) 정부
유가증권총괄장에는 기획재정
부장관이 정하는 계산과목마다
계좌를 설치하고 각 통합점으로
부터의 매월의 수불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면액의 수불상
화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 (정부유가증권수불명세장)
정부유가증권수불명세장에는
정부유가증권총괄장의 계산과
목마다 각 통할점별로 계좌를
설치하고 각 통할점으로부터의
매월의 수불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면액의 수불상황을 기
록하여야 한다.

----- 비치해야 -----
 ---.

1. (현행과 같음)

2. 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

3. 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4. 5. (현행과 같음)

②-----
----- 유가증권출납사항

제21조(정부유가증권총괄장) -----

----- 총괄점 -----

----- 출납보고 -----

----- 출납상 -----

환을 기록해야 -----.

제22조 (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
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에는
정부유가증권총괄장의 계산과
목마다 각 총괄점별로 계좌를
설치하고 각 총괄점으로부터의
매월의 출납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면액의 출납상황을 기
록해야 한다.

제23조(정부유가증권수불총괄장)

정부유가증권수불총괄장에는
정부유가증권총괄장의 계산과
목마다 해당 통할점과 그 소속
취급점별로 계좌를 설치하고 해
당 통할점의 수불액과 그 소속
취급점으로 부터의 매월의 수불
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
면액의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

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에는
공채증서·주권·증권의 종류
마다 각 회계별 유가증권취급공
무원별의 계좌를 설치하고 장수
와 권면액의 일별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

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에는
공채·증서·주권·증권마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별 계좌를
설치하고 장수와 권면액의 일별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

사표) ①한국은행은 매월 정부
소유유가증권의 수불액과 잔액

제23조(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에는
정부유가증권총괄장의 계산과
목마다 해당 총괄점과 그 소속
취급점별로 계좌를 설치하고 해
당 총괄점의 출납액과 그 소속
취급점으로 부터의 매월의 출납
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
면액의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
다.

제24조(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

-----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

제25조(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

-----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

제27조(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

사표) ①-----
----- 출납액-----

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
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3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8조(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

사표) ①한국은행은 매월 정부
보관유가증권의 수불액과 잔액
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
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 3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정부유가증권수불계산서)

①한국은행(본점에 한한다)은
매월 정부유가증권의 수불상황
을 적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
유가증권 수불계산서 3부를 작
성하여 2부는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제출한 수불계산서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증빙서류) 한국은행은 정

부소유유가증권 또는 정부보관

작성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

사표) ①-----
----- 출납액-----

작성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

①-----
----- 출납상황

----- 출납계산서 -----

----- 보관해야 -----.

②-----
----- 출납계산서-----

첨부해야 -----.

제34조(증빙서류) -----

유가증권의 증빙서류를 각각 수	----- 출
불별로 구분하고 다시 공채증서	납별-----
주권과 증권마다 유가증권취급	-----
공무원 별로 매일분을 합철한	-----
후 일계표를 첨부하여 보존하여	----- 보존해야
야 한다.	-----.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각인) ①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직인의 규격상 정식명칭으로 새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약칭으로 새길 수 있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각인) ① ----- -----. ----- ----- ----- 여러 개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직원의 등록) ①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소속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인 경우에는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통합지출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주임자소속관서의 장이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각각 등록	제7조(직원의 등록) ①----- ----- ----- --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 ----- ----- ----- 등록

<u>하여야</u> 한다.	<u>해야</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	제9조(직인의 폐기) -----
원은 직인의 개정, <u>마멸</u> , 망실	----- <u>닿아 없어짐</u>
또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
개폐로 인한 <u>당해</u> 관서의 폐지	----- <u>해당</u> -----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인을	-----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
에 <u>의한</u>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 <u>따른</u> -----
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	-----
을 적고 소속관서의 장의 인증	-----
을 받아 이를 제2조제1호부터	-----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회계관	-----
계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중앙	-----
관서의 장에게, 같은 조 제5호	-----
에 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인	-----
경우에는 주임자소속관서의 장	-----
에게 각각 <u>제출하여야</u> 한다.	----- <u>제출해야</u> -----.